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 2026. 3. 18.(수) 〕  
〔 제336회 임시회 〕

# 심사결과보고서



완도군의회

# 의회운영위원회



【의안번호 제3567호】

## 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2. 26. 박성규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6. 2. 26.

다. 상정일자 : 2026. 3. 9.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자문사항·위촉 절차·임기·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 및 위촉에 관한 사항(제2조)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제3조)
- 자문요청 절차에 관한 사항(제4조)
-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해촉 사유를 규정함(제6조)

- 수당 지급 및 소송비용 준용에 관한 사항(제7조)
- 자문처리실적부 비치에 관한 사항(제8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의견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합하여 2명 이내로 둔다.

② 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완도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쟁송 관련 사항

3. 의안 심의 관련 법률사항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위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당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③ 법률고문이 의회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처리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2. 26. 조영식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6. 2. 26.

다. 상정일자 : 2026. 3. 9.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 소관 자치법규 5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안 제1조)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제62조에서 제64조로 수정함.
-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안 제2조)
  - 제9조 중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인용 조문을 제3조에서 제4조로 수정함.
-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안 제3조)
  - 제14조제2항 "법 제15조제1항" → "제15조제1항",  
제15조제1항 "법 제14조제2항" → "제14조제2항"으로  
오탈자를 수정함.

-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 제7조를 신설하여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등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 완도군의회위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안 제5조)
  - 제2조제4호 중 인용 법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수정하고 "장해등급" 용어를 명시함.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의견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2조(「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를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로 한다.

제3조(「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완도군의회위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의회위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제1조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4조----- ----- ----- -----

### 제2조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 -----제4조----- ----- -----

### 제3조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②제15조제1항-----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의안번호 제3569호】

##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2. 26.      조영식 의원 외 8명
- 나. 회부일자 : 2026. 2. 26.
- 다. 상정일자 : 2026. 3. 9.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 소관 규칙 2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안 제1조)
  - 제12조 중 급수별로 달리 정하던 응시연령(7급 이상 20세,  
8급 이하 18세)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18세  
이상으로 일원화함.
- 완도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안 제2조)
  - 제1조 중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인용 조문을 제6조에서 제7조로 수정함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의견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규칙안 1부. 끝.

##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을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으로,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해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완도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 완도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 제6조”를 “조례 제7조”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제1조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입 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 에 <u>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 당해야 한다.</u></p> <p>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p>	<p>제12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채용 시험에 응시하려는 ----- ----- -- <u>18세 이상이어야</u> ----- ----- &lt;삭 제&gt; &lt;삭 제&gt;</p>

### 제2조 「완도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의 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 다.) <u>제6조</u> 규정에 의하여 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제7조</u> ----- ----- -----</p>

# 행정자치위원회



【의안번호 제3571호】

## 완도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2. 23. 최정욱 의원

나. 회부일자 : 2026. 2. 23.

다. 상정일자 : 2026. 3. 9.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완도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사업(안 제4조, 안 제5조)
- 경비의 지원(안 제6조)
-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시설의 위탁(안 제8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및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확대하고, 이를 통해 신중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며 지역사회의 안정과 활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기재생략

### 6. 심사의견: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활동적 노후생활”이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

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 각 호의 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신중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5.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완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2. 23. 허궁희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6. 2. 23.
- 다. 상정일자 : 2026. 3. 9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한국수화언어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원사업(안 제4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안 제5조)
- 포상(안 제6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 관내 한국수화언어의 체계적인 발전과 보전을 도모하여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적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한국수화언어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농정 체성을 확립하고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한국수어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와 공공기관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등 농민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에 공로가 있거나 한국수어의 인식개선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농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 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3573호】

#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2. 19. 완도군수
- 나. 회부일자 : 2026. 2. 19.
- 다. 상정일자 : 2026. 3. 9.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청산해양치유공원 전체 프로그램 일괄 체험 시 약 2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관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감안하여, 단일 프로그램 체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단체 방문객을 유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해양치유공원 프로그램 정의 조항 개정(안 제2조)
- 단일 프로그램 이용료 산정(안 별표1)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기존의 청산해양치유공원의 프로그램 체험방식에 더해 개별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단체 관광객의 방문을 활성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순차적으로 체험하는 일련의”를 “체험하는”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양치유공원 프로그램 이용료(제7조 관련)

가. 전 프로그램 이용시(현행 안)

구분	개 인	단 체	비고
어른	12,000	10,000	
청소년·군인	7,000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li> <li>• 군인: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소방원과 의무경찰, 사회복지요원을 포함한다)</li> </ul>
어린이	5,000	3,000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

나. 단일 프로그램 이용시(추가 안)

구분	개 인	단 체	비고
어른	4,000	3,000	
청소년·군인	3,00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li> <li>• 군인: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소방원과 의무경찰, 사회복지요원을 포함한다)</li> </ul>
어린이	2,000	1,000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

1. “단체”란 1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그 일행을 말한다.
2.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은 입장료의 50% 할인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해양치유공원 프로그램”이란 해양치유공원 내 설치된 치유시설을 <u>순차적으로 체험하는 일련의</u> 과정을 말한다.</p>	<p>제 2 조 ( 정 의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 <u>체험하는</u></p> <p>-----.</p>

【의안번호 제3574호】

##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2. 26.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2. 26.

다. 상정일자 : 2026. 3. 9.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해조류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 추출을 통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영세기업 지원을 위하여 준공 예정인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완도군 해양바이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 사업개요

- 위탁시설: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 위탁기간: (재)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
- 위탁사무: 시설 및 운영 관리 전반
- 위탁비용: 8.3억 원/년

3. 민간위탁 방법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

4. 책임한계

-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탁기관에 있음

5. 민간위탁 기간

-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2년 연장 가능)

6. 지도·감독

- 위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7.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8. 토론요지: 기재생략

9. 심사의견: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관계법령(붙임 1). 끝.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 「완도군 해양바이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시설물(이하 “해양바이오 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등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위탁할 수 있다.
1. 해양바이오시설물 재산 및 물품 등의 운영·관리
  2. 해양바이오시설물 이용 프로그램의 선정·개발·운영
  3. 그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완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완도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완도군의회 동의의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⑤ 군수가 제1항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3576호】

##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2. 19.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2. 19.

다. 상정일자 : 2026. 3. 9.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2008년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 상 용어가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2조2호 (정의) “법인등기부등본에”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로 개정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자치법규상 명칭을 현행화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에”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은 <u>법인등기부등본</u>에, 개인은 <u>사업자등록증</u>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관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p>	<p>제 2 조 ( 정 의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em;"><u>법인 등 기사 항 증 명 서 에</u></p> <p>-----</p> <p>-----</p> <p>-----</p> <p>-----.</p>